

# 심사보고서

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22
----------	-----

2022. 11. 30.(수)  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제405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
(2022년 11월 24일 상정의결)
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이종구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,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‘한국전자기술연구원’과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약을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- 위 치 :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송대리 321-4번지
- 면 적 : 15,350.86㎡
- 용 도 : 안전신뢰성기반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분석 테스트베드 구축
- 신청인 : 한국전자기술연구원
- 기 간 : 20년간 대부료 면제(2022. 12. 1. ~ 2041. 11. 30.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### 가. 제출배경

- 지난해 우리도 청주에 위치한 3개 산업단지\*가 전국 유일의 ‘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’로 지정(‘21. 2. 23.)됨  
\* 오창과학산업단지, 오창제2산업단지,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
- 우리 도(道)와 산업통상자원부는 ‘안전신뢰성기반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분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\*’을 후속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  
\* 2022. ~ 2024(3년) / 452.9억원(국비 256.1, 도비 105.6, 시비 88, 기타 3.2)
-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도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함

### 나. 주요 검토내용

-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사업부지(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송대리 321-4, 1만 5350㎡)를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2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관련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제출되었음

- 동 재산에 대한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 ( '22. 10. 20.)되었음
- 본 동의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 단서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상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사업내용을 포함함
-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「산업기술 혁신 촉진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1조 단서조항 및 제34조제1항 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20년간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충족함
- 우리 도가 이차전지 기업 및 기반 집적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R&D 혁신기관인 ‘차세대전지연구센터’의 중복 이전과, ①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분석 지원, ②기업 R&D 역량강화, ③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의 지속적 협업을 위해 공유재산 무상대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함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민간 비영리법인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지방보조금으로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공유재산을 장기간 무상대여하고 향후 해당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타당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
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서 당해 재산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고, ①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, ②양도와 교환 또는 대여, ③담보의 제공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,
-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본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함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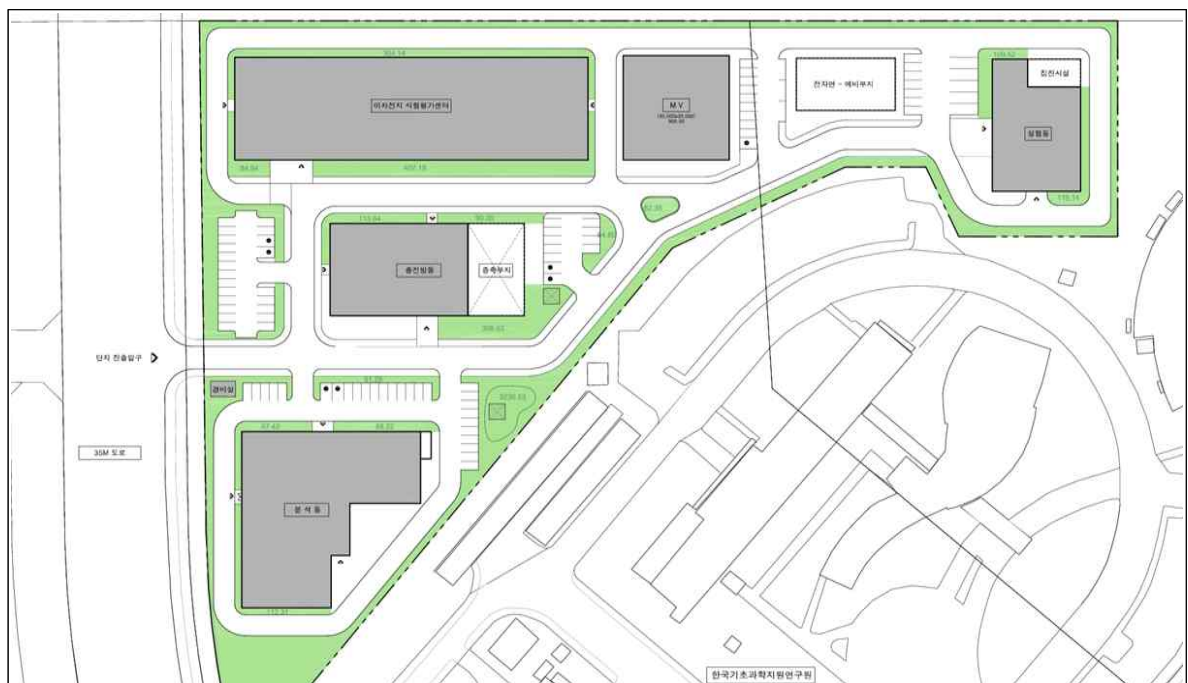
-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참고자료, 관계법령

## 참고 사항

### ○ 집적화 부지(오창읍 송대리 321-4, 26,022.63㎡) 내 구축 인프라

구분	소재·부품	셀	모듈·팩
센터명	시험분석 테스트베드	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	MV급 환경신뢰성 평가센터
사업기간	2022~2024	2021~2023	2022~2026
총사업비	453억원	297억원	130억원
사용면적	15,350.86㎡	9,194.44㎡	1,477.33㎡
주관기관	한국전자기술연구원	충북테크노파크	충북테크노파크

### ○ 구축 평면도



## 관계 법령

### <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>

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 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9조(계약의 방법)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, 증권의 경우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,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.

제31조(대부기간)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4조(대부료의 감면)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생략
2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## <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>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~ 4. 생략
5. 제29조제1항제13호·제23호에 해당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
제29조(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)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.

1. ~ 22. 생략
23.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

제30조(대부기간)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.

1. ~ 3. 생략
4.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

제35조(대부료의 감면)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~ 3. 생략
4. 제29조제1항제14호·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